

「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년 2월 25일, 이창열 의원 발의
- 회부일자: 2026년 3월 12일 회부
- 상정일자: 제31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6년 3월 13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창열 의원)

#### 가. 제안이유

-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뿐만 아니라 주택 매입 대출이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제명변경
  - (기존) 전월세 보증금 → (변경) 주거자금
- 지원범위 확대

- (기존)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확대) 주택 매입 대출이자 지원

○ 지원금액 확대

- (기존) 대출잔액의 3퍼센트 내에서 연 최대 100만원까지
- (확대) 대출잔액의 3퍼센트, 대출잔액 1억원 한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경숙)

※ 검토보고서 전문 ..... [붙임 1]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 「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이창열 의원
- 제안일자 : 2026. 02. 25.
- 회부일자 : 2026. 03. 12.
- 상정일자 : 2026. 03. 13.

### 2. 제안이유

-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뿐만 아니라 주택 매입 대출이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제명변경
  - (기존) 전월세 보증금 → (변경) 주거자금
- 지원범위 확대
  - (기존)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확대) 주택 매입 대출이자 지원

○ 지원금액 확대

- (기존) 대출잔액의 3퍼센트 내에서 연 최대 100만원까지
- (확대) 대출잔액의 3퍼센트, 대출잔액 1억원 한도

#### 4. 검토의견

##### 가. 관련 근거

- 「주거기본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거권 보장을 위해 주거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하며,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해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층, 지원대상아동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주거 수준을 향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나. 입법의 취지

-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원 제도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고자 함.

#####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제명을 “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에서 “평창군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로 개정하였으며,

- 안 제1조, 안 제 2조, 안 제 3조에서는 “전월세 보증금” 을 “주거자금” 으로 개정함.
-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을 “거주자이면서 무주택자일” 것에서 “거주자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로 개정하며 가목과 나목을 신설해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의 경우와 주택 매입 대출이자의 경우로 기준을 나누어 정하였고, “임대차계약 서상 주소” 를 “임대차계약서상 또는 매매계약서상 주소” 로, “임대주택” 을 “주택” 으로 규정하였음.
- 안 제6조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사업 및” 을 “매입자금·전세 자금 대출사업 또는” 으로, “임대차” 를 “임대차 계약 또는 매매” 로 개정하며,
- 안 제7조에서는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을 확대하여 “지원금은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퍼센트,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에서 연 1회 지원한다” 로 개정함.

## 5. 종합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중심의 조례를 주택 매입 대출이자까지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청년층의 실질적 주거비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 개정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주거기본법**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23.>

1. 소득수준·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3.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4.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5.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6.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하여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
7.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8. 저출산·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9.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관련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

# 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창열 의원)

|          |     |
|----------|-----|
| 의안<br>번호 | 543 |
|----------|-----|

발의연월일: 2026년 2월 25일

발 의 자 : 이창열 의원

찬 성 자 : 남진삼, 박춘희, 김성기 의원

## 1. 제안이유

-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뿐만 아니라 주택 매입 대출이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제명변경
  - (기존) 전월세 보증금 → (변경) 주거자금
- 지원범위 확대
  - (기존)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확대) 주택 매입 대출이자 지원
- 지원금액 확대
  - (기존) 대출잔액의 3퍼센트 내에서 연 최대 100만원까지
  - (확대) 대출잔액의 3퍼센트, 대출잔액 1억원 한도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주거기본법」

나. 예산조치 : 붙임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집행기관의견수렴 : 2026. 2. 12. ~ 2026. 2. 24.(13일간), 의견없음

## [조례안]

평창군 조례 제            호

### 평창군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평창군 청년 주거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전월세 보증금**”을 “**주거자금**”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전월세 보증금**”을 “**주거자금**”으로, “**임차주택의 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고**”를 “**주택을 매입(신축 포함)하거나 전·월세 임차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아**”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전월세 보증금**”을 “**주거자금**”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거주자이면서 무주택자일**”을 “**거주자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임대차계약서상 주소**”를 “**임대차계약서상 또는 매매계약서상 주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대주택**”을 “**주택**”으로 한다.

가.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의 경우: 무주택자일 것

나. 주택 매입(신축 포함) 대출이자의 경우: 해당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제6조제3호 중 “전세자금 대출사업 및”을 “매입자금·전세자금 대출사업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임대차”를 “임대차 계약 또는 매매”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지원금은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퍼센트,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에서 연 1회 지원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 결정되었거나 신청 접수된 사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u>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u></p>   | <p><u>평창군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u></p>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년층의 주거권 보장과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년 <u>전월세 보증금</u>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p>제1조(목적) -----<br/>-----<br/>----- <u>주거자금</u> -----<br/>-----<br/>-----.</p>  |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u>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u>”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u>임차주택의 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고 납부하는 이자</u>를 말한다.</p> | <p>제2조(정의) -----<br/>-----.</p> <p>1. (현행과 같음)</p> <p>2. <u>주거자금</u> -----<br/>----- <u>주택을 매입(신축 포함)하거나 전·월세 임차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아</u> -----<br/>-----.</p> |
| <p>제3조(<u>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u>)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에게 <u>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u>를 지원할 수 있다.</p>  | <p>제3조(<u>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u>) ---<br/>-----<br/>----- <u>주거</u><br/><u>자금</u> -----<br/>-----.</p>   |

제5조(지원대상)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청년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청년 단독 거주자이면서 무주택자일 것

<신 설>

<신 설>

2. 평창군에 주소(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를 두고 실제 거주할 것

② 군수는 지원에 필요한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제1항에서 정한 내용 외 소득수준, 임대주택의 면적, 대출금액 상한, 대출 만료 기간 등의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 1. 2. (생략)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5조(지원대상) ① -----
-----
-----
-----.

1. ----- 거주자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
---

가.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의 경우: 무주택자일 것

나. 주택 매입(신축 포함) 대출
이자의 경우: 해당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2. -----
-- 임대차계약서상 또는 매매계
약서상 주소-----
-----

② -----
----- 주택-----
-----.

제6조(지원 제외 대상) -----
-----
-----.

- 1. 2. (현행과 같음)
3. -----

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사업 및  
월세 지원 대상자

4. 2층 이내 혈족과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5. 6. (생략)

제7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① 지  
원금은 대출잔액의 3퍼센트 내에  
서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연 1회 일시 지급한다.

② · ③ (생략)

----- 매입자금 · 전세자금 대  
출사업 또는 ---

4. ----- 임대차 계  
약 또는 매매 --

5. 6.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① 지  
원금은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퍼  
센트,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에  
서 연 1회 지원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 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 7. (생략)

### <주거기본법>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소득수준·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3.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4.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5.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6.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하여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
7.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8. 저출산·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9.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관련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5항 관련)

###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7조에 따른 지원금 지급
- 제7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① 지원금은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퍼센트,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에서 연 1회 지원한다.

###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1호

###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 4. 작성자

|     |                    |
|-----|--------------------|
| 작성자 | 평창군 도시안전국 도시과장 이정의 |
| 연락처 | (033) 330 - 2470   |